



현명한 비영리단체 (Nonprofits) 를 위한 웨비나 (Webinar): 비영리단체 이사회 (Nonprofit Board) 의 역할

2023년 10월 10일

발표자:

뉴욕 변호사 연합(Lawyers Alliance for New York)

김주영 (Jay Kim), 자원봉사 변호사 (Volunteer Attorney)



이 프리젠테이션은 비영리 단체 및 이사회를 규율하는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이 프레젠테이션의 범위는 완벽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불완전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역 중 많은 부분이 법률 및 판례법의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특정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사실이나 상황을 다루기 위해 작성되거나 설계되지 않았으며 귀하는 이를 법적 조언의 출처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귀하가 해당 정보를 검토하더라도 귀하와 뉴욕 변호사 연합 (Lawyers Alliance for New York), 또는 뉴욕 변호사 연합의 변호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 간에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조언이나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관할권의 적절한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뉴욕 변호사 연합 소개

- 뉴욕 변호사 연합은 NYC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영리 및 사회적 기업을 위한 무료 비즈니스 및 거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 직접적인 법적 대리
 - 뉴욕 변호사 연합은 130개 로펌 및 기업의 1900명 이상의 자원 봉사 변호사가 참여하며, 매년 1,200개 이상의 법적 문제들에 대해 660개 이상의 비영리 조직을 대표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웨비나 (webinar), 간행물, 법적 경고
 - 리소스 콜 핫라인: **(212) 219-1800 x 224**



프레젠테이션 개요

- 이사회에 법적 의무
- 필수 법인 문서
- 바람직한 이사회 관리
- 필수적인 이사회 재정 감독
- 이해 상충



이사회 의무: 비영리 단체를 관리하는 법률

- 비영리 단체는 중요 감독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의존합니다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많은 법률과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뉴욕주 비영리 법인법 (New York State Not-for-Profit Corporation Law (“NPCL”))
 - 연방 세법 및 연방 국세청
 - 뉴욕주 자선국 (New York State Charities Bureau)
 - 자금 제공자 요구 사항
 - 근로 계약법
 - 계약법
 - 로비법



이사회 의무: 이사의 역할

- 비영리 단체의 임무를 수립
- 면세 상태 확보(및 유지)
- 회사 문서 승인
- 법적 및 윤리적 책임 준수 및 보장
- CEO를 고용, 지원 및 평가
- 적절한 자금 확보 및 재정 감독
- 전략 계획 수립 및 진행 상황 및 프로그래밍
- 감독조직 정책 수립
- 공적 지위 향상
- 이사회 갱신 및 교육



이사회 의무: 싯탁 의무 (Fiduciary Obligations)

- **주의 의무 (Duty of Care):** 일반적으로 싯중환 사람이 유사한 위치 및 유사한 상황에서 행사하는 주의
-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선 전문가(회계사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앓은 예:
 -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앓음
 - 기업 의사 결정에 있어 성실성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 의무: 싯탁 의무 (Fiduciary Obligations)

- **충성 의무 (Duty of Loyalty):** 이사회 구성원은 개인적 또는 본인의 직업적 목적보다 비영리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예:
 - 한 자선 병원 법인이 병원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병원은 그 땅에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을 지은 병원 이사 중 한 명이 소유한 법인에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이해 상충이라고 판단하고 판매를 무효화했습니다.
- 외부 감시 및 평판 위험



이사회 의무: 싯탁 의무 (Fiduciary Obligations)

- **순종 의무 (Duty of Obedience):** 이사 및 임원은 관련 법규 및 조직의 자선 목적 조건 내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다음을 포함:
 - 거버넌스 (governance) 문서의 정기적인 유지 관리
 - 적시에 필요한 서류 작성
 - 내부 정책 준수
-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았은 예:
 - 조직의 임무는 환경 보호를 돕는 것이었지만, 이사회는 조직의 주된 임무와 무관한 저비용 요가 프로그램 생성을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개인 책임?

- **비즈니스 판단 규칙 (Business Judgement Rule):** 이사회 구성원이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면 일반적으로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 인사 및 고용 관행은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수가 없는 이사에 대한 추가 보호가 존재합니다.
- 제한된 노출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방어 비용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 및 임원 보험을 고려하십시오.



필수 법인 문서: 법인 설립 증명서

- 뉴욕주 국무부 (NYS Department of State)에 제출
- 목적 설명서 (**Purpose Statement**):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관리합니다.
-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필수 법인 문서: 정관

- 이사회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비영리 기업의 내부 운영을 관리하는 규칙 및 절차
-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모범관행 및 설립된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함
 - NPCL은 2013년, 2015년, 2017년에 개정되어 많은 조직의 조례가 **구식 (outdated)**이 되었습니다.
- 조직에 구성원(이사회를 선출하는 그룹)이 있는 경우 이 문서는 구성원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보다 수정이 쉽고 유연함



필수 법인 문서: 정관의 주요 조항

- 구성원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이사
 - 숫자
 - 자격
 - 임기/ 해임
 - 정족수 및 투표
 - 비보상
- 임원
- 위원회 (이사회/조직)
- 정관 개정 규칙
- 운영 조항
 - 계약
 - 보험/배상



바람직한 거버넌스 (Governance): 이사회 투표

- 이사회는 회의에서 또는 만장일치 서면 동의를 통해 하나의 기구로 활동합니다.
- **이사회 조치:** COI, 정관 또는 법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출석** 이사 과반수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정족수:** COI 또는 정관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의 과반수
- 조례 또는 COI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전화 회의 및 화상 회의 참여가 허용됩니다.
- 대리투표 (투표할 대리인 지정)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절대다수:** COI 또는 정관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정족수)하거나 특정 유형의 조치를 승인하기 위해 투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Governance): 임원 및 이사의 역할 확인 및 구별

- 임원 (Officers)은 보통 회사의 이사 (Directors)입니다.
- 일반적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장/회장
 - 총무
 - 재무
- 고려해야 할 부분:
 - 임기
 - 책임
 - 보상



바람직한 거버넌스: 이사회 위원회

- 두 가지 유형의 위원회:
 -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를 구속할 수 있음)
 - 조직의 위원회 (일반적으로 자문 위원회라고 함)
- 이사회만이 이사회 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없어야 함
 - 권한은 조례, COI 또는 이사회 결의에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정족수의 과반수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의장은 임명할 수 없습니다.*
- 전체 이사회에서 위원회로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이사회 위원회

-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모든 권한이 부여됨(위임할 수 없는 권한 제외)
 - 전체 이사회보다 더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 상황에서 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 일반적으로 재무를 포함
 - 투자 및 재정 정책에 대한 자문
-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 독립이사 (independent director)여야 합니다.
 - 독립 감사관을 유지하고 감사를 감독하며 감사 결과를 검토합니다.



바람직한 거버넌스: 비영리 단체 내의 위원회

- 비 이사회 구성원을 가질 수 있음
- 비영리 단체를 구속할 수 없음 – 대신 권장 사항 만들기
- 전체 이사회와 과반수가 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해야 하는 동일한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예:
 - 연간기부위원회
 - 전략적 제휴 탐색
 - 젊은 전문 "이사회"



재무 감독: 990 양식 (Form 990)

- IRS에 대한 연간 보고 의무
- 세금 면제 조직이 제출하는 정보용 세금 양식
 - 대중은 공문서 Form 990에 포함된 정보에 의존합니다.
- "총 영수증"을 기반으로 제출된 다른 공문서 Form 990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공개합니다.
 - 재무 공시
 - 거버넌스 절차
 - 임원 보상 및 이해관계자 거래
 - 로비
- **제출 기한:** 조직의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15일까지
 - **주의:** Form 990 3회 연속 미제출 -> 면세 자격 자동 취소



재무 감독: CHAR 500 양식 (Form CHAR 500)

- **초기 제출:** 뉴욕에서 자선 기부금으로 연간 \$25,000 이상을 받는 조직은 자선 요청을 위한 뉴욕 법무장관 자선국에 등록을 위해 양식 CHAR 410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제출:** 등록이 필요한 조직은 매년 양식 CHAR 500을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총수입에 따라 CPA "검토 보고서" 또는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제출 마감일:** 조직의 연말 결산으로부터 4개월 반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무 감독: 연례 감사 매출 한계

-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제출된 연례 보고서의 경우:

연간 매출	필수 제출
\$250,000 이상 \$750,000 이하	독립 CPA의 <u>검토</u> 보고서
More than \$750,000	독립 CPA의 <u>감사</u> 보고서

-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연례 보고서의 경우:

연간 매출	NY AG에 필수 제출
\$250,000 이상 \$1,000,000 이하	독립 CPA의 <u>검토</u> 보고서
\$1,000,000 이상	독립 CPA의 <u>감사</u> 보고서



재무 감독: 연례 감사를 감독하는 독립 이사의 역할

- **독립 이사 (Independent Director):** 일반적으로 다음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
 - 조직과 사업을 하고,
 - 조직과 사업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 조직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법인에 상당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음
- 감사 요구 사항은 다음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이사회**의 독립 이사, 또는
 -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위임
- 독립 이사는 독립 감사를 유지하고, 감사 (audit)를 감독하며, 매년 감사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 감독: 연례 감사

- 이전 또는 현재 과세 연도 동안 수익이 **USD 백만 달러 이상**인 조직의 추가 이사회 의무:
 - **감사 전**: 감사자 (Auditor)와 함께 감사 범위 및 계획 검토
 - **감사 후**: 감사자와 검토 및 논의:
 - 내부 통제의 중대한 위험 및 약점
 - 감사인의 활동 또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제한
 - 경영진과의 중대한 의견 불일치
 - 회계 및 재무 보고 프로세스의 적절성
 - **매년 (Annually)**: 감사인의 성과 및 독립성 고려



충돌 (Conflicts): 이해 상충이란 무엇입니까?

- **이해 상충**은 이사, 임원 또는 기타 핵심 인물이 조직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수 있는 외부 이해 관계 또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몇 가지 일반적인 시나리오:
 - 경영진 보상 설정
 - "내부자"가 금전적 이해 관계가 있는 상업 거래에 대한 투표



충돌 (Conflicts): 이해 상충 정책

- 뉴욕법에 의해 요구됨
 - 모든 NY 비영리 단체는 **관련 당사자 거래**를 식별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해 상충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비재무적 상충도 다룰 수 있음).
 - 사실에 따라 적절한 공개를 하지 않으면 뉴욕주 법무장관이 충성의무 위반 사유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지는 않지만 990 양식 (Form 990)에서 이에 대해 묻습니다.



충돌 (Conflicts): 뉴욕주 요건

- "이해 상충"의 정의
-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에 충돌을 공개하는 절차
- 관련 당사자 거래의 공개, 주소 지정 및 문서화 절차
- 갈등이 있는 사람이 이사회나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요구 사항
- 문제에 대한 심의 또는 투표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갈등 당사자의 모든 시도에 대한 **금지**
- 충돌이 논의되거나 투표된 모든 회의의 의사록을 포함하여 충돌의 존재와 해결이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
- 이사가 최초 선출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충돌 공개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



충돌 (Conflicts): 관련 당사자 거래

- **관련 당사자 거래:** 거래/계약에서
 - "관련 당사자"는 금전적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 조직 또는 그 계열사가 당사자인 경우
- **관련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직 또는 계열사의 이사, 임원 또는 **핵심 인물**
 - 2) (1)의 개인의 **친척** 또는
 - 3) (1) 또는 (2)에 설명된 개인이 35%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갖고 있거나 합작회사/전문 기업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직간접적 지분을 가진 모든 **법인**



충돌 (Conflicts): 관련 당사자 거래

- **핵심 인물:**

- 이사/임원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조직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조직 또는 조직의 활동, 자산, 수입 또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관리합니다. 또는
- 조직의 자본 지출 또는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거나 결정합니다.



충돌 (Conflicts): 관련 당사자 거래

- 예외:

- 최소 거래 (*de minimis* transactions)/금전적 이익
-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검토하지 않고 유사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래
- 관련 당사자는 자선 수혜자 클래스의 일부인 경우

- 검토 및 승인:

- 전체 이사회, 또는
- 이사회가 승인한 이사회 위원회 (예: 감사 위원회)



충돌 (Conflicts): 관련 당사자 거래

- 특수관계자가 거래에서 **상당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사회/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대체 거래를 고려하고,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조직에 가장 이익이 되는 거래만 승인합니다.
 - 승인 근거를 서면으로 동시에 문서화
- 회의에서 관련 이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심의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 심의/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충돌 (Conflicts): 연간 공개 의무 사항

- 관련 당사자 거래를 식별, 공개, 주소 지정 및 문서화하는 절차
- 이사를 처음 선출하기 전과 그 후 매년 이사는 다음 사항을 식별해야 합니다.
 - 이사가 조직과 관계가 있는 임원, 이사, 수탁자, 구성원, 소유자 또는 직원인 모든 **법인**
 - 조직이 참여자이며 이사가 이해 상충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거래**



충돌 (Conflicts): 특수관계자 거래 소급 승인

- 처음에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관련 당사자 거래에 대해 제한된 법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 조직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거래와 관련하여 법무장관으로부터 정보 요청을 받기 **전에** 관련 당사자 거래를 비준해야 합니다.
 - 서면 문서:
 - 1차적으로 특수관계인 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 특수관계자 거래 승인 근거
 - 향후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시정 절차 채택



충돌 (Conflicts): 뉴욕 법무장관 집행 권한

- 뉴욕 법무장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작할 권한이 있습니다.
 - 법을 위반하거나 합당하지 않거나 조직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보상 계약을 포함하여 실제 또는 제안된 관련 당사자 거래를 금지, 무효화 또는 취소합니다.
 - 손해 배상, 배상, 제거 및/또는 회계 처리, 그리고
 - 고의, 고의가 있는 경우 2배의 손해배상



충돌 (Conflicts): 초과 혜택 거래

- **초과이익거래 (Excess Benefit Transaction):** 면제단체가 **결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로서 그 대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합리적인 보상은 과잉혜택이 아니다
- **결격자**는 5년의 회고 기간 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 **페널티:**
 - 혜택을 받은 자격이 없는 내부자에 대한 소비세
 - 이사회 구성원은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고의로 거래에 참여한 조직 관리자에게 10% 세금



고려해야 할 추가 정책

- 내부 고발자 정책(조직에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수익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필수)
- 경영진 보상
- 인사/고용
- 족벌 (Nepotism) 정책
- 투자정책
- 선물 수락 정책
- 문서 보존
- 내부 재무 통제
- 정책승계 계획
- 비상 사태 대비



추가 질문 연락처:

문의 전화 핫라인
(212) 219-1800 내선번호 224